

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

의안 번호	151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5. 10.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정이유

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할 달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2조)
-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내지 제8조)
- 위원수당 등 기타사항(안 제9조 내지 12조)

4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
 - 동법시행령 제9조의3 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구성)
- 제정조례안 : 붙임
- 입법예고 : 2005. 7. 27 ~ 8. 18 기간중 특기할 의견없음.

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
2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국장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달성군 소속 공무원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4분의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소위원회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,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·조사·심의하고,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.

제9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제척)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1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)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